

제27차 ICCAT 정기회의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11.12(금)~23(화) (11일) / 화상회의
- (참석자) 50개 체약국, 5개 비체약국, 6개 정부간 기구, 25개 NGO, 1개 비체약국 약 480명

(한국대표단)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수석대표) 외 12명

소 속	부 서 · 직 위	성 명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나일강
	국립수산물과학원 연구사	이미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	박민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	박정연
	조업감시센터 주무관	김승현
	조업감시센터 전문관	김태린
(주)동원산업	해양수산2팀 과장	조보람
	해양수산2팀 대리	강승권
(주)사조산업	참치사업부 수산1팀 차장	박진석
	참치사업부 수산1팀 과장	추승현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1부 주임	백상진
	해외협력1부 사원	김태호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양재걸

○ 주요 회의 의제

- (이행위원회) FAD 세트 정보 미제출, 눈다랑어 초과어획 등
- (패널1) 눈다랑어 TAC 및 어획한도 할당, FAD 금어기 등
- (패널2) 서부, 동부 참다랑어, 북방 날개다랑어 관리조치 및 MSE 등
- (패널4) 북방 청상아리, 북방 황새치, 북방 청새리상어, 바다거북 등
- (상설작업반) 3개 작업반 수립, 전재, eBCD, 서부 해역 승선검색 등

I. 주요 회의 결과

- [패널1] 열대다랑어 권고(19-02) 개정
 - (TAC) '21년 61500톤 → '22년 62000톤
 - (FAD 금어기) '21년 1~3월(90일) → '22년 1.1~3.13(72일)
 - (이월·전배) 현행 유지 → 이월 : 기본 어획한도 10%, 전배 허용*
 - * '22년 한국 눈다랑어 어획한도
= 자발적 어획한도(미정) + '20년 미소진(100톤) - 대만 전배(223톤)

- [패널2] 서부, 동부 참다랑어, 북방 날개다랑어 권고 개정
 - (서부 BFT) TAC : '21년 2,350톤 → '22년 2,726톤(16% 증가)
 - (동부 BFT) TAC : '21년 36,000톤 → '22년 36,000톤*
 - * '22년 한국 참다랑어 쿼터 = 기본쿼터(200톤) + '21년 미소진(미정) + 대만 전배(50톤)
 - (북방 ALB) ① MP 채택 ② '22년 TAC 37,801톤 ③ 한국 어획한도 242톤

- [패널4] 북방 청상아리 권고 개정, 바다거북 제안서 미채택
 - (청상아리) ① '22-'23년에 보유 금지 ② 향후 허용되어도 최대한도 250톤
 - (바다거북) 일본, EU의 반대로 미국 제안서 미채택

- [상설작업반] 전재 권고(16-15) 개정, 작업반(4개) 수립 결의 채택
 - (전재) ① IMO 번호 없는 운반선 사용 금지 ② 전재 신고 5일로 변경
 - (작업반) 어획증명제도(일본), 전자감시시스템(EU), 근로기준(미국), 참다랑어 가공선 원격 전자감시 시범사업(EU) 작업반 수립

- [기타] 의장단 선출
 - 총회(EU), 제1부의장(모로코), 제2부의장(퀴라소), 재정위(미국), 이행위(미국), 패널1(가나), 패널2(일본), 패널3(남아공), 패널4(알제리), 상설작업반(EU)

II. 세부 회의 내용

□ 이행위원회

1. 패널1 관할 권고 불이행

○ 역사적 FAD 세트 정보 미제출

- (사안) 세네갈과 가나는 19-02 항에 따라 요구되는 역사적 FAD 세트 정보를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
- (소명) 세네갈은 “raw data로 제출했다, FAD 이슈는 PWG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가나는 “요구되는 형식에 맞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

○ 2020년 눈다랑어 초과어획

- (사안) 세네갈과 브라질은 19-02 어획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

CPC	2020년 어획한도(t)	2020년 어획량(t)	초과어획(t)
세네갈	1,322.73	2,700.50	1,377.77
브라질	6,043	6,284	241

- (소명) 브라질은 불이행을 확인하고 자원보존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세네갈은 “집계 오류가 있다, 해석의 문제로서 패널1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답변

2. 패널4 관할 권고 불이행

○ 상어류·새치류 이행확인표(체크시트) 작성 불이행

- (사안) 일부 CPC들이 해당 어종을 목표로 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체크시트를 미작성
- (의장 등) 이행위 의장, 미국, EU 등은 상기 사유가 체크시트 미작성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이전 회의에서도 확인되었음을 언급

○ 북대서양 청상아리 권고(19-06) 불이행

- (사안) 미국은 요구되는 정보를 미제출한 CPC들을 분류하여 제시

보고 - O , 미보고 - X

CPC	양륙량	사망폐기량	생존방류량
스페인, 모로코, 트리니다드앤토바고, 베네수엘라	O	X	X
포르투갈, 프랑스, 대만(미보유)	X	O	X
앙골라, 가봉,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수리남	X	X	X

- (미국) 모로코 12m 미만 선박들의 청상아리 어획 및 옵서버 승선 여부를 질문하였고, 체크시트에서는 무어획으로 보고되었음을 지적
- (모로코) ① 청상아리는 황새치 조업 중 혼획으로 발생하고, ② 15m 미만* 선박은 옵서버가 승선하기에 안전하지 않으며, ③ 대안적인 관찰 방법 승인을 과학위에 요청할 것임을 언급

* 주 : 청상아리 권고(19-06)상 옵서버 승선 예외는 12m 미만 선박에 적용되나 과학 옵서버 권고(16-14)는 15m 미만 선박에 적용되어, 미국과 모로코 간 (의도적인) 수치 불일치 발생. 12m : 15m 대립은 청상아리 권고 개정 논의에서도 나타났음

3. 기타 사안

○ 온라인 보고 시스템(IOMS) 개발을 위한 작업반 계속

- (권고개정) 작업반 활동 계속을 위해 권고 19-12* 개정

* 통합 온라인 보고 시스템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ICCAT 권고

- (EU 등) EU, 캐나다, 중국은 작업반이 ICCAT 권고들 내 중복적인 보고 의무들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보고 의무 간소화 필요를 강조
- (미국) 중복적 보고 의무 제거에 관한 논의는 패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도 작업반이 아닌 패널에 있음

○ 과학 오피서버 프로그램 권고(16-14) 이행 현황

- (요구사항) 16-14에서는 ① 오피서버 데이터 외에 ② 국가 오피서버 프로그램의 구조 및 이행(승선율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

* 오피서버 데이터는 일반 조업정보와 함께 7.31까지 제출해야 하고, 오피서버 프로그램 정보는 국가 연례보고서의 일부로 SCRS 회의 개최 전(10.16)까지 제출 필요

< 권고 16-14 이행 현황 >

구분	CPC	비고
이행	알제리,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국, 대만, 코스타리카, 쿠라소, 이집트, 엘살바도르, EU, 프랑스(생피에르), 가나, 과테말라,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세인트빈센트앤그레나딘, 튀니지, 터키, 영구, 미국	-
불이행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필리핀, 우루과이, 수리남	무어획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세네갈, 트리니다드앤토바고	연례보고서 / 의장 서한에 소명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가봉, 감비아, 그레나다,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기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시리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

- (사무국 의견) ① CPC들의 불완전한 작성으로 연례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추론하는 것이 어려움, ② 내년에는 각 CPC에게 구체적인 정보 요청할 계획임, ③ 15m 미만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 승인을 위한 요청이 현재까지 없었음을 언급함

□ 패널1

1. 과학위원회 보고

○ 열대다랑어 자원상태 보고

- 과학위원회는 '21년에 실시된 눈다랑어 자원평가 결과 및 황다랑어, 가다랑어 자원상태를 보고함

구분	주요 보고 내용	권고 내용
눈다랑어	<p>(최대연령) 이석 분석을 통해 최대연령을 15세 > 17세로 변경 → 자연폐사율 변경</p> <p>(평가방법) FAD 어쿠스틱 부이를 통한 치어 풍도지수 도입*, 새로운 통합 연승 지수 적용</p> <p>(자원상태) 녹색영역 41%, 적색영역 49%, 초과어획 상태이나 과도어획 중은 아님 ('17년 대비 자원상태 개선)</p>	<p>(1) 새로운 평가방법 도입으로 Kobe 매트릭스 전망치는 경계하여 해석 필요</p> <p>(2) 높은 가능성으로 자원을 녹색영역에 유지하기 위한 TAC 수립 필요</p>
황다랑어	<p>(최대연령) 이석 분석을 통해 최대연령을 11세 > 18세로 변경 → 자연폐사율 변경</p> <p>(지원상태) 녹색영역 54% 적색영역 22%, '19년 결과는 '16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주요 투입 데이터(폐사율, 성장률, 지표) 및 적용 모델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p>	<p>(1) TAC 12만톤 → '33년까지 녹색영역에 있을 가능성 63% 이상</p> <p>(2) 치어 폐사 감소 조치 필요</p>
가다랑어	<p>(계군구분) 동부와 서부 계군으로 구분</p> <p>(자원상태) 두 계군 모두 초과어획 상태, 과도어획 중이 아닐 것으로 생각(likely)</p> <p>(평가일정) 마지막 평가는 '14년에 실시, '22년 실시 예정</p>	<p>(1) (동부) 12-13년 수준으로 어획 또는 노력량 유지</p> <p>(2) (서부) MSY 수준으로 어획량 유지</p>

○ 주요 질문 및 답변

구분	질문	답변
EU	'19년까지 데이터로도 자원상태 전망은 녹색영역 80% 이상임. '20, '21년의 낮은 어획량을 고려할 때, 자원상태는 이미 녹색영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20, '21년의 낮은 어획량도 이미 전망에 반영되었음
	22세, 25세 어류는 발견된 적이 없는데, 왜 최대연령이 22세, 25세일 가능성도 검토에 반영되었는가?	-
한국	최대연령 변화와 자연폐사율 추정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 > 자연폐사율 감소, 연령 감소 > 자연폐사율 증가로 추정하고 있음
	최대연령이 높을수록 왜 산란자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는가?	산란자원량은 여러 요인(성장률, 폐사율, 어획노력 등)에 의해 결정됨. 더 오래 자원에 있으면 산란도 높아질 가능성 있음
일본	'높은 가능성'은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가?	과학위가 더 분명한 수치를 제공했어야 함. 미래 논의에 참조하겠음
	IATTC는 선망선에 대해 선박별 통제를 하고 있음. ICCAT은 선망선 선박별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IATTC처럼 선박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음. 최소 10년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 가능함
미국	이전 대비 데이터는 많이 추가되지 않았음. 평가방법 변화가 평가 결과에 미친 영향은?	연령, 자연폐사율, 풍도지수, 선단 특성, 연승 지표 변화가 불확실성 증가에 기여했음

○ EU의 과학위 보고서 수정 요청

- EU는 과학위 보고서가 ① 과학위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고 있고, ② 당시 보고서 수정 요청을 했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③ 총회에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하였음

* 고베III 전략 매트릭스에 자연폐사율에 관한 불확실성이 고려된 점 (→ 주 :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지나치게 사전예방적인 TAC를 수립할 이유 없음)

- 아프리카 CPC들은 수정에 반대하였고, 과학위 보고서 채택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미국, 캐나다*도 반대하여 수정 요청은 미수용

* 조연 요약(executive summary) 및 관련 수치의 채택을 서면으로 하는 것에 반대

○ 19-02 내 위원회 요청 작업에 대한 답변

조항	요청 작업	과학위 답변
28항	'20-'21년 시행된 FAD 금어기 효과, 월별 스킴 및 FAD 조업 어획량, 치어 어획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미제출됨 ② 금어조치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치어 재포획 제한에는 효과가 있으나, 눈다랑어에 대해서는 결론 불가(AOTTP 연구)
31항	선박 또는 CPC별 FAD 세트 수 제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FAD 조업은 다양한 요인(투척 및 추적 개수, 부이 기술, 공급선 사용 등)에 좌우 ② FAD 조업 데이터 분석은 용이하지 않음. 현 시점에서 조연 제공 불가 ③ 새로운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는 한, 선박 또는 CPC가 아닌 선단별 FAD 세트 수에 대한 조연 제공 가능
33항	공급선의 황다랑어, 눈다랑어 치어 어획에 대한 영향	현 시점에서 조연 제공 불가(EU 선망선 CPUE 표준화 작업에서 검토 예정)
55항	오피버 또는 EM 커버리지	현 시점에서 조연 제공 불가(새치류 작업반에서 검토 예정)
66항 a)	눈다랑어, 황다랑어 치어 어획 감소를 위한 전체 조업 금지의 효과성	작업 진전 없었음. '22년에 분석 시도 예정
66항 b)	대형 또는 EEZ 밖 조업하는 모든 선박의 능력에 대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대형 선망선(335m³) 능력에 대한 추정만 가능 ② '21년 기준, 약 80척의 선망선이 협약수역 내 조업 중, 어류 수용 능력 89,472톤 → 현재 초과능력 수준 ③ 능력 지표에 대한 합의 필요 ④ 향후 타선박에 대한 평가도 수행 예정

2. 열대다랑어 권고(19-02) 개정 논의

구분	제안서 주요 내용
<p>의장</p>	<p>(TAC) '22-24년 : 61,500톤 (할당) TAC 변동에 따라 연안개도CPC들에게 점진적으로 재할당 ① TAC=61500톤일 경우 : 비연안개도CPC들은 어획한도 5% 추가 감축, 연안개도CPC들은 어획한도 10% 증가 ② TAC>61500톤일 경우 : TAC 증가분만큼 연안개도CPC들은 각 X%씩 어획한도 증가, 그 외 CPC들은 어획한도 유지 ③ TAC<61500톤일 경우 : TAC 감소분만큼 비연안개도CPC들은 각 Y%씩 어획한도 감축, 연안개도CPC들은 어획한도 유지 (FAD) ① 금어기 1-3월, ② 선박당 활성화 개수 '23년 250개로 제한</p>
<p>일본</p>	<p>(TAC) '22년 : 61,500톤, '23년 : 70,000톤, '21년 어획량이 TAC(61,500톤)를 초과할 경우, 초과량은 '23년 TAC에서 차감 (할당) '23년 TAC 증가분은 개도CPC들에게 할당, 개도CPC들이 할당방법을 논의하여 '22년 총회에 제출 (FAD) ① 금어기 1-3월, ② 선박당 활성화 개수 300개로 제한</p>
<p>중미 (퀴라소,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p>	<p>(TAC) '22-24년 : 75,000톤 (할당) ① 19-02 어획한도 3500톤 초과 CPC가 어획한도를 20% 이상 미소진할 경우, 최근('16-'19년) 평균어획량을 한도로 적용 ② 어획한도 차감 후 미할당 TAC는 개도CPC들에게 할당 (FAD) ① 금어기 1월, 어획한도를 초과한 CPC의 경우 익년에 1-2월 적용, 어획한도를 15% 이상 초과한 CPC의 경우 1-3월 적용 ② 선박당 활성화 개수 300개로 제한 (MCS) 대형연승선은 전재 20% 이상을 항구에서 실시</p>
<p>EU</p>	<p>(TAC) 75,000톤 (할당) ① 16-01을 논의 시작점으로, 연안개도CPC들을 위한 할당분 수립 ② 어획한도 수립 전까지 위 CPC들은 최근 평균어획량으로 어획량 유지 ③ 어획한도 없는 비연안개도CPC는 1575톤 미만으로 어획량 유지 (이월) 쿼터표 내 CPC(7개)만 기본쿼터 10%까지 허용 (FAD) ① 금어기 1-3월, ② 선박당 활성화 개수 300개로 제한 ③ 소유권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FAD 등록부 설치 (MCS) ① 대형연승선은 전재 20% 이상을 항구에서 실시 ② ROP 부활</p>

○ 제안서 소개 및 CPC 의견 표명

- 의장은 16-01 내 쿼터 보유CPC들이 연안개도CPC들에게 할당을 이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장안을 제출(남아공 준비)하였고,
- 일본, 중미 CPC들, EU는 별개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각 제안서 소개 후, 주요 요소들에 대해 (이전 회의들에서 계속되었던) CPC들의 입장만 반복되고, 이견 해소를 위한 시도조차 불가능했음
- 논의 시간 부족으로, EU가 기존 권고 연장안 준비가 필요함을 언급

○ 기존 권고(19-02) 연장안에 대한 의견 대립 후 절충안으로 합의

- 의장은 19-02 연장안(남아공 준비)을 제시하였으나, 연장안에서 자의적으로 새로운 요소가 도입(연안개도CPC FAD 금어기 면제)되고 현행 일부 요소(전배, 이월)는 삭제된 점에 대한 이의가 제기(EU, 한국)되었고,
- 중미CPC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 FAD 금어기 3개월은 수용 불가하고, TAC는 '20년 기준 62,500톤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은 절충안으로 TAC 62,000톤, 금어기 2.5개월(3.15)을 제시함
- EU는 이견이 있는 3요소(TAC, 이월 조항, FAD 금어기)를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함
- 아프리카 CPC들은 TAC 61500톤, 금어기 10주(3.11)를 주장함
- 한국은 2.5개월과 10주의 중간인 72일(3.13)을 절충안으로 제시하였고, 중미CPC들은 72일이 IATTC 조치와 동일한 것으로서 수용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 코트디부아르만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수용하여 연장안에 합의
- (합의안) 2022년 : ① 눈다랑어 TAC 62,000톤 ② 전배(한국 → 대만 : 눈다랑어 223톤), 이월('20년 미소진 어획한도 → '22년) 허용 ③ FAD 금어기 1.1~3.13(72일), 그 외 19-02 조치를 1년 연장

□ 패널2

1. 동부 및 지중해 참다랑어 권고 개정

○ 2022년 TAC 및 CPC 쿼터

- (TAC) 과학위 변경 조언이 없으므로 '22년 36,000톤으로 유지*

* '23년 이후 TAC는 '22년 총회에서 채택될 관리절차(MP)에 따라 결정

CPC	'22년 쿼터(t)
EU	19,460
모로코	3,284
일본	2,819
튀니지	2,655
터키	2,305
리비아	2,255
알제리	1,655
이집트	330
노르웨이	300
한국	200
아이슬란드	180
알바니아	170
중국	102
대만	90
시리아	80
미할당	115
합계	36,000

- (쿼터 전배) '22년에 ① EU는 영국에 48.4톤 ② 대만은 한국에 50톤까지 전배 승인*

* '22년 한국 참다랑어 쿼터 = 200톤(기본) + 50톤(전배) + α ('21년 미소진 이월)

○ 쿼터 전배 승인 조항(9항)

- (논의배경) CPC간 쿼터 전배 승인 조항에 대해 회기간 회의에서 논의 후 3개 안*이 연례회의에 제출

* (1안) "권고 01-12에도 불구하고 쿼터 전배는 관련 CPC 간 승인 하에서만 허용되고, 전배가 이루어지기 48시간 전까지 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일본 제안)

(2안) "전배는 CPC 상호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고, 전배량은 ICCAT 사무국에 사전 통보 되어야 한다." (의장 제안)

(3안) 조항 삭제 (미국 제안)

- (논의결과) 2안(남방 날개다랑어(16-07) 조항 문구)으로 합의

○ 어획보고 주기 변경 : 매주 → 격주

○ 축양장 통제조치 강화

- (논의배경) '18년 몰타 축양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IUU에 대한 후속 조치로 참다랑어 통제추적 작업반이 수립되어 회기간 논의를 진행한 후 19-04 관련 조항 개정안*이 연례회의에 제출

* 주요 개정 사항 : 가두리 작업 모니터링, 어류 수량 불일치 시 조사수행 및 후속조치 절차, 임의 통제 및 이월 절차 표준,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및 협업 절차 등

- (논의결과) 일부 조항*들에 대한 추가 논의 후 개정안 합의

* 102항 : 선어 시장 공급을 위해, CPC 검색관의 통제가 있을 경우, 축양장 당 최대 하루 1톤(연간 한도 50톤)까지 지역옵서버의 인증 없이 참다랑어 수확 가능. 본 조항은 늦어도 '23년까지 IMM 회의 등에서 검토

2. 서부 대서양 참다랑어 권고 개정

○ 2022년 TAC

- '21년 자원평가 결과*에 따른 과학위 조언을 반영하여 TAC 16% 상향 (2,350톤 → 2,726톤)

* 새로운 평가 모델 적용 및 데이터 2년 업데이트. 산란자원량 풍도지수 16% 상승

- EU는 외부 독립심사에서 자원평가에 적용된 모델의 부적합성 및 데이터 부족이 지적된 점을 언급하며 16% 상향에 반대했으나, 보고서에 이의 기록을 요청하고 상향안을 수용함

3. 참다랑어 관리전략평가(MSE) 경과

○ MSE 회의(11.12)

- (배경) 연례회의 직전 참다랑어 예비관리절차(CMP) 작업 경과를 소개하고 관리자 피드백을 받기 위한 MSE 회의가 개최
 - (TAC 한도) CMP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동부에 한하여 잠정 55,000톤을 최대한도로 설정하고 작업하기로 함
 - (TAC 변동) CMP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리주기 간 TAC 변동 폭을 잠정 20%를 최대한도로 설정하고 작업하기로 함. 최소 변동 규칙*에 대해서는 100톤 안(CCSBT 규칙)이 제시되었으나 미합의
- * TAC 변동 폭이 매우 작을 경우, TAC 변경으로 인한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TAC 유지
- (기타) ① 어획량-자원상태 간 균형(trade-off) 범위는 더 확대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요청 ② 관리주기는 2년과 3년으로 작업 ③ 비상상황 절차 개발 작업은 MP 채택 후에도 가능하므로 MSE 작업계획에 미포함 ④ 동부 참다랑어 자원평가는 예정대로 '22년에 수행 ⑤ '22년에 MSE 회의 3회(3월, 5월, 10월) 개최

4. 북방 날개다랑어 권고 개정

○ 관리절차(MP) 채택

- '16년부터 시작된 MSE를 통해 어획통제규칙(HCR) 및 비상상황 정의를 포함하는 MP 채택

< 북방 날개다랑어 MP 주요 요소 >

- (기준 생물량(B_{THRESH})) MSY 수준의 생물량(B_{MSY})
- (최저한계 생물량(B_{LIM})) $= 0.4 \times B_{MSY}$
- (목표 어획사망율(F_{MSY})) $= 0.8 \times MSY$ 수준의 어획사망율(F_{MSY})
- (최저한계 어획사망율(F_{MIN})) $= 0.1 \times F_{MSY}$
- (자원평가 주기) 3년 (차기 평가: '23년)
- (최대 어획한도) 50,000톤
- (최대 변동률) 현재 생물량(B_{CURR})이 기준 총생물량(B_{THRESH}) 이상일 경우, 어획한도 최대 증가율은 25% 최대 감소율은 20%

○ '22-'23년 TAC 및 어획한도

- (TAC) 37,801톤
- (어획한도) ① EU(29,095.1톤), 대만(4416.9톤), 미국(711.5톤), 베네수엘라(337.5톤) 외 CPC들은 242톤 ② 일본은 자국의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량의 4.5% 내로 제한하도록 노력
- (이월) 조정연도는 기준연도+2, 최대한도 25%

○ 비상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절차 채택

- 비상상황 판단 기준
 - 1) MSE에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자원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MP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가 미가용 또는 부적절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3) MP에 의해 도출된 TAC보다 총어획량이 높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비상상황의 존재가 반드시 MP로부터 도출된 TAC를 폐지할 사유는 되지 않고, 과학위가 지표 및 조언 수정을 검토할 것이 요청됨

□ **패널3**

○ 남방 날개다랑어 권고(16-07) 1년 연장

- (TAC) 2400톤
- (어획한도) 대만(9400), 남아공(4400), 나미비아(3600), 브라질(2160), EU(1470), 일본(1355), 한국(140) 등 16개 CPC(3항) 외 CPC는 25톤
- (이월·전배) 어획한도 표(3항)에 명시된 CPC만 가능 (필리핀 추가)

□ 패널4

○ 북대서양 청상아리 권고(19-06) 개정

- 자원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북대서양 청상아리 회복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3년간('18~'20) 이루어졌으나 실패

* '17년 과학위 평가 : 초과어획 상태, 과도어획 중일 가능성이 90%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35년까지는 자원량 감소가 불가피

- 금년 2차례 회기간 회의(1차: 7.6~8, 2차: 10.27)를 통해 이견이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결정만 남겨 둔 의장안이 마련되어 총회에 제출

- 핵심 쟁점은 보유 허용 여부*로서, 예외적인 보유 허용을 주장하는 측(EU, 미국, 모로코)과 예외 없는 보유 금지를 주장하는 측(영국, 캐나다, 세네갈, 가봉 등)이 대립

* '70년까지 회복가능성 수치(%) 결정으로 TAC 및 보유 가능성이 결정 (예 : 60% > TAC: 300톤, 52% > TAC: 500톤)

- 회기간 회의에서 일본은 사망폐기량 · 생존방류량에 따른 총허용보유량 산출방법*을 제안하였고, 주요 CPC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안에 도입됨

* (사망폐기량+생존방류량) ≥ TAC일 경우 → 총허용보유량은 0 (모두 보유 금지)

(사망폐기량+생존방류량) < TAC일 경우 → 총허용보유량 = TAC - (사망폐기량+생존방류량)

- '70년까지 회복가능성 수치(%)에 대해 60% 주장(EU, 미국)과 70% 주장 (보유 금지 CPC들)이 대립한 후, 캐나다의 절충안으로 합의

- (합의) ① '70년까지 회복가능성 60~70% ② '22~'23년에는 보유 금지 ③ 데이터 검토 후 '23년에 보유 금지 조치 계속 여부 결정 ④ 새로운 조언 전까지 (보유 허용의 경우) 총허용보유량은 250톤 ⑤ CPC 보유한도 할당 기준은 '13~'16년 평균어획량

- 그 외 개정 조치 주요 요소

요소	결정 사항
보유 허용 예외	12m 미만 선박의 경우, 항차당 1미까지 허용
취급 지침 도입	선원 안전에 대한 고려 하에 어획된 청상아리 폐사율 감소를 위한 안전 취급 및 방류 지침을 부록에 도입
데이터 제출	Task I 및 Task II 보고에 사망폐기량·생존방류량 추정 방법을 제출
옵서버 면제	15m 선박은 위원회가 승인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 가능
데이터수집 장치	과학위는 청상아리 혼획 관련 침강시간, 어획수심, 환경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소형 데이터 로거 부착에 관한 시범사업 착수
자원평가	24년, 29년 34년에 실시

○ 바다거북 권고(19-06) 논의

- (논의배경) 미국은 '19년 회의에서 미채택된 제안서*를 다시 제출

* 주요 내용 : 바다거북 보존을 위해 천해(100m 내) 연승어업에서 1) 대형 환형낙시 또는 2) finfish 미끼 사용

- (주요의견)

구분	의견
일본	① 환형낙시 및 finfish 미끼 사용의 바다거북 보존 효과는 인정함 ② 하지만 환형낙시는 특히 청상아리 어획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과학위 결론이 없으므로 제안서 반대
미국	① 태평양과 동일한 조치임 ② 올해 데이터 오류 수정으로 환형낙시 사용시 청상아리 어획 증가 없음이 확인되었음
과학위 부의장	J-후크와 비교하여 환형낙시 사용시 청상아리 어획 증가율은 크지 않으나, 양승시 폐사 감소율(10%)은 큼
EU	태평양에서의 조치가 대서양과 지중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지중해에서의 조치를 토대로 미국과 협의하고자 함

- (논의결과) EU는 미국에 지중해수산위원회(GFCM) 조치 문구로 수정 제안 하였으나, 미국은 GFCM 조치는 자발적인 조치임을 이유로 수정제안을 거부하고, 제안서는 미채택*

- * 미국은 내년에 다시 제출할 것임을 언급하고, EU도 제안서를 준비할 것임을 언급
- (EU 등) EU 외 4개 CPC*는 미국이 자국 공해 유자망어업금지법에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바다거북 저감조치를 취하지 않은 28개국을 지정한 데 대해 공동입장문**을 제출

* 일본, 나미비아, 대만, 모로코

** 요지 :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ICCAT 협약, 공해어업협정에 규정된 공해 생물자원의 관리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현재 바다거북 혼획에 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ICCAT에서 진행 중이고, 미국은 ICCAT 내에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 상설작업반

○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논의

- (채택) 11개 제안서 채택

제목	제안	주요 내용
어획증명제도 작업반 수립 결의	일본	어획증명제도(CDS) 필요성, 적용 어종, 설계 및 이행 어려움, 타 제도와 중복 방지, 양립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 수립 * 일본은 반드시 CDS를 수립하는 것이 아닌 CDS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
전자감시시스템 작업반 수립 결의	EU	전자감시시스템 표준개발, 이행전략 등에 관한 권고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 수립 * 일본은 본 작업반이 새치류 작업반에서 진행 중인 EMS에 관한 논의 후에 진행되어야 함을 언급
근로기준 논의 과정 수립 결의	미국	ICCAT 어업 내 근로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 수립 * 중국 요청으로 '강제노동' 용어를 '근로기준'으로 수정 * 일본은 본 작업반의 결론이 구속력 있는 조치 마련이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

제목	제안	주요 내용
참다랑어 가공선 원격 전자감시 시범사업 수립 결의	EU	참다랑어 수확 부문 통제 강화를 위해 가공선에 대한 원격 전자감시 시범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결의 * 일본은 시범사업 모든 비용을 EU가 부담해야 하고 사 무국 업무 가중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
전재에 관한 권고(16-15) 개정	미국, 세네갈	IMO 번호 없는 운반선 사용 금지, 전재 후 신고 기한 15일 → 5 근무일로 변경 * 한국, 중국, 일본의 반대로 비CPC 운반선 사용 금지 제안은 미수용
20m 이상 선박목록 수립 권고(13-13) 개정	EU, 미국	전문에 IMO 번호 대상 선박 확대(20m→12m)에 관한 언급 추가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 권고(18-13) 개정	노르웨이	CPC 쿼터가 준수될 경우, 개별 선박 쿼터를 초과하여 어획된 참다랑어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 * EU의 우려 제기로, 매년 이행위에 사안이 회부되도록 규정
참다랑어 어업 VMS 데이터 교환 권고(07-08) 개정	IMM 작업반	VMS 최소기준 개정 권고(18-10)와 참조 관계 명시, 참 다랑어 공동조업 기국으로 하여금 선박 식별을 위한 정보 기입을 의무화
무국적선에 관한 권고	IMM 작업반	협약수역 내 활동하는 무국적선은 IUU어업으로 간주
IUU 선박목록 권고(18-08) 개정	IMM 작업반	대상 선박을 규정한 1항 내 i) '협약수역 내 조업 및 지 원 활동' 문구 추가
eBCD 시스템 적용에 관한 권고(20-08) 개정	PWG 의장	EU 회원국 간 일부 참다랑어 상품 유형 거래에 대한 eBCD 적용 면제 기한을 1년 연장

- (미채택) 2개 제안서 미채택

제목	제안	주요 내용
자국민 이행 촉진 권고(06-14) 개정	EU, 영국, 미국	IUU어업에 관여한 자국민에 대한 실효적 조치 이행 * 중국은 다른 ICCAT 권고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유로 반대
서부 대서양 국제공동 검색제도 권고	캐나다	서부 대서양 해역을 위한 국제공동 승선검색제도 수립 * 중국은 승선검색제도 수립을 위한 협약상 근거 없음을 이유로 반대
상어 권고	9개 CPC*	첫 양륙 지점까지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일본 반대) * 벨리즈, EU, 가봉,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생피에르 미켈롱), 미국

□ 재정행정위원회

○ 협약 개정을 위한 팔마 데 마요르카 의정서 비준 현황 보고

- (배경) '12년부터 작업반을 구성해 협약 채택('70년) 이후 변화된 상황 및 UN 공해어업협정('01년 발효)을 반영하고자 협약개정 추진. '19년 총회에서 개정 협약문* 채택(15개 CPC가 서명)

* 주요 개정 사항 : 1) 적용대상 어종 확대 (상어, 가오리 등) 2) 어업실체 참여권 보장 3) 분쟁해결절차 규정 4) 권고 발효 시점 변경 (회람 후 6개월 → 4개월)

- (현황) 사무국은 기탁처인 FAO로부터 제공된 비준 현황*을 보고함

* 비준 CPC (4) : EU('20.9), 노르웨이('20.11), 캐나다('21.6), 일본('21.7)

- (촉구) 비준하지 않은 채약 당사자들의 비준을 촉구함

○ 2022-23년 사무국 예산 및 분담금 채택

구분	2022년 (전년비 증가)	2023년 (전년비 증가)
사무국 예산	4,788,677 유로 (63억 8,239 만원) (6.67%)	5,127,577 유로 (68억 3,408 만원) (7.08%)
한국 분담금	32,806.79 유로 (4,372 만원) (8.83%)	34,946 유로 (4,658 만원) (6.54%)

○ 사무국 업무 현황 연구 용역 결과

- (논의배경) 제2차 ICCAT 성과평가 패널 권고로 수행된 사무국 직원 업무 현황에 관한 연구 용역(Crowe Advisory SP, S.L.) 결과를 보고함
- (권고내용) 코로나 이후 회의 업무 폭증으로 90% 이상의 직원이 초과근무 수행 중으로 지속 불가능하고 보상 및 개선책이 시급
- (주요의견) 용역 권고된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하여 업무 가중 상황을 개선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2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 사무국 수행 중인 일부 업무들을 외부 용역을 통해 수행하기로 함

○ CPC 지위 획득기준에 관한 권고(03-20) 개정 제안서(일본) 채택

- (제안배경) 의무적인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 협력적 비체약 당사자, 실제, 어업실체들에게도 기여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미납시 위원회는 사유를 검토하여 조업기회 할당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함
- (주요의견)

CPC	의견
대만	대만은 계속해서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해 왔음. 과거 납부 실적도 위원회 검토에서 고려되어야 함
미국	비체약 당사자는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자발적' 용어 규정 필요
노르웨이	자발적 기여금 납부 여부에 따라 조업기회 할당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국제법(공해어업협정) 위반임
일본	비체약 당사자를 차별하는 의도가 아닌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납한 비체약 당사자에게는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

- (논의결과) 협력적 비체약 당사자, 실제, 어업실체는 '24년부터 체약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분담금 기준 50%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할 것이 장려, 미납시 조업기회 할당에서 고려하는 문구는 삭제

□ 기타

○ 의장단 선출

- (신임) 총회 의장(EU)*, 제1부의장(모로코), 제2부의장(퀴라소), 재정위(미국), 패널1(가나), 패널4(알제리)

* Mr. Ernesto Pena Lado

- (연임) 이행위(미국), 상설작업반(EU), 패널2(일본), 패널3(남아공)

○ 주요 경과

- 복수의 의장직에 입후보하는 CPC들이 있어, 일본은 하나의 CPC가 하나의 의장직에만 입후보할 것을 제안
- 재정위 의장 입후보자가 1명뿐이고, 입후보자*에 대한 CPC들의 지지가 높아 미국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Deidre Warner-Kramer (미국) : ICCAT 협약 개정 작업반 의장, NAFO 재정위 의장 등 역임

-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에게도 예외 적용
- 캐나다가 패널1 의장에 입후보하였으나 중도 사퇴